##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8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백선희·이수진·신영대

김재원 • 이해민 • 이학영

신장식 · 김선민 · 허 영

김성환 · 황명선 · 서왕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 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
  - 2.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 절차 지원
  - 3. 재난 상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 4.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실> ▲ 14조의3(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이하이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지원센터(이하이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지원센터(이하이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한 유가족度합지원센터(이하이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지원센터(이하이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지원센터(이하이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 유가주합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 유가족度합 유가주합 유가족度합 유가주합 유가족합 유가주합 유가주합 유가주합 유가주합 유가주합 유가주합 유가주합 유가주
4.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 및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